

이관직  
비욘드스페이스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jick, KIRA

# 현상설계에 대하여

## On Design Competitions

### 염려스러운 전문가 집단으로서 건축사협회의 위상

각 분야의 협회 등으로 이를 지어진 전문가 집단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전이라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의 각 분야와 계층, 개인간 혹은 집단간의 풀어가기 어려운 갈등 혹은 불신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처럼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사회와 산업 혹은 문화 등 각 분야는 나름의 특성이 있다. 근대 민주사회의 형성과정이 짧은 우리의 현실은 축적된 역사와 문제 해결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수입된 제도와 체계화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가면서 보완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 각 분야와 경제의 생산과 소비 주체간 들에 의견이나 상식들이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한 불균형과 갈등 과정 안에서 각 분야의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은 흔히 이익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다. 또 실지로 이익과 관심에 따라서 수많은 전문가 집단, 협회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혼란과 갈등이 건축과 건설 관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의 업무가 건축사의 영역

에서 분리되어 나가고, 실내건축기협회가 생겨나고, 아직도 계속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 건축사보수기준대가(설계비요율) 자체가 불공정 거래로 논의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이유로 자본의 논리로 치장하면서 건축설계용역을 겸업의 범위로 만들려는 것 등이 우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러한 수입된 민주적 제도의 정착과정의 훈란과 갈등 속에 건축사사무소들은 육성과 보호 없이 생존을 위한 과당경쟁에 내몰리고 감시와 제재 기관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불공정 기준을 만드는 몰염치한 이익집단으로 몰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건축문화를 이끄는 문화인이나 작가로 대접 받지 못하고 설계의 질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설계용역비를 받아내려는 상술의 장사꾼 대접을 받는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선언과 일단의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개의 건축사사무소의 건전한 노력과 의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계획비의 법적 제도화와 같은 과당 경쟁방지를 위한 노력과 제도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경쟁과 노력을 통하여 일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을 통하여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생업인 건축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력을 보상 받는다는, 사회 발전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 동기부여의 시스템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건축사 자신과 건축사보인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몇 가지 안 되는 수주 방식의 하나로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설계의 제도와 운영, 그것을 수행하는 주최측의 마음가짐과 의도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상설계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들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정성적인 로비에 의존하려 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심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당하지 못한 불의에 대해 못 본 척 지나쳐버리곤 해왔다.

민주사회는 구성원의 마음과 제도가 병행하여 발전하여야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음에 관한 문제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바른생활 혹은 도덕이라는 과목을 통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교육이 있어 왔다. 마음의 문제와 정신적인 태도는 이러한 사안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추상적이고 탁상론적인 주장이 되기가 쉽다. 여기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 문화적 관점

### 치열한 혹은 비열한 전쟁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상 편리를 위한 문화적 물이해와 잘못된 제도 법규와 건설회사의 이익의 부합,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로 해서 턴키시장은 점점 더 소규모의 프로젝트까지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심사한 사람이 평가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지고 심사 내용까지도 익명으로 숨어버리는 이상한 비겁한 제도를 인정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상황이기도 하다.

비교적 큰 시장에서의 그런 상황은 여전히 당신들의 나라인 아귀다툼과 치출하고 비열한 시장이 있다. 현상설계라는 동네가 그런 곳이다.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현상설계로 진행된다. 큰 규모는 턴키제도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이러한 규모에 의한 구분은 건축과 도시, 국가의 중요한 문화사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프로젝트의 도시적, 문화적 성격에 따라 수행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기급적 턴키 프로젝트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건교부, 문광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문화적인 무지와 행정 편의의 결과가 도시와 건축의 문화적 발전을 즐먹고 있다. 빠른 시행과 빠른 건설은 임기 중에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현행 지방자치의 제도와 정치적 전략과 관계가 있다.)

현상설계는 덤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혹 있는 신인들과 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들이 작가로서 인정받고, 자신이 투자하고 노력과 쌓아온 실

현상설계의 제도 혹은 법적 장치는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제도적 효율의 관점, 공정성이 세 가지의 입장이 겹토되어야 한다.

현상설계는 문화적인 관심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회적 제도이다. 도시와 지역의 계획과 건축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구상되고 수행된다. 그것에 대해 아이디어와 수행능력을 경쟁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좋은 것을 채택하려는 행위는 문화적 관심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서양의 도시와 건축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러한 문화적 관심의 성과를 보여준다.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그러한 공모전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에 와서도 건축과 도시의 계획과 건설에 있어서 현상설계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턴키제도(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는 현상설계와 유사해 보이지만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된 제도가 아니라 건설회사의 이익과 발주자의 행정 편의, 밸류 위험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려는 제도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설계 분야가 대형 건설회사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왜곡되는 나쁜 영향에 빠져있다. 건설회사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사사무소의 구성과 구조가 지나치게 대형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설계용역의 분배와 건축사보의 고용시장 구성이 빅이번 부익부로 더욱 열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군다나 정부는 법과 제도를 행정 편의로 고쳐가면서 턴키의 공사규모 범위를 더욱 낮추려 하니 심히 염려스럽다. 국가적 제도와 방향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의 문화적 관심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도시와 건축은 단순한 건설 효율과 산업적인 생산성이나 투자에 대한 수익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처럼 빠르고 편리한 방식만을 추구한다면 도시와 건축은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다. 도시와 건축은 오래된 문화적 누적을 통하여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물량 위주와 관리 편의의 텐키제도가 아니라 조금은 더디고 진행상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설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상설계의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 제도적 효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여러 분야의 내용이 중첩되고 복잡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최대한 효율적이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하여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근의 것은 2005년 6월에 예술문화분야의 건축물에 대한 경우를 보완하여 개정되었다.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기타 공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상설계에 대한 법적인 용어는 DESIGN COMPETITION의 번역용어인 '설계경기'이다. 설계경기는 UNESCO 규정과 UIA의 지침에 의하면 프로젝트 설계경기 Project Competition과 아이디어 설계경기 Ideas Competition으로 구분된다. 건교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진행하려는 프로젝트설계경기의 지침인 셈이다.

건축설계운영지침은 정부의 사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심사위원에 대해서 건축가협회의 '한국건축설계규준'(1972년 제정, 1984년 개정, 1999년 개정)이나 UNESCO와 UIA의 국제설계경기의 규정에 비해 진행 및 심사위원 구성에 인원수가 많고(UIA는 7인 이내, 건축가협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 출수, 건교부의 건축설계운영지침은 10인 이상 15인 이내), 공무원과 정부기관의 임원, 교수 등이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5번 항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 있는지'라고 표현되어 있다. 심사위원의 자격을 건축가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규준에 비해 설계 심사의 취지에 있어서 건축사나 건축가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축과 도시에 이어서 다양한 표현과 발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프로젝트의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어의 차원에 대해서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

건축사협회는 건축과 도시에 관한 국내의 설계경기 전반에 관한 설계 경기진행 규준을 만들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발주하는 실제 프로젝트의 설계경기에 대한 진행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도의 수행을 주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관련기관의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건축주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경쟁적인 좋은 아이디어와 설계를 원하지만 어떻게 설계자를 만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건축사협회는 프로젝트설계경기와 아이디어설계경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준을 만들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고 이해시켜 전문가집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건축사사무소간의 불미스러운 왜곡된 싸움을 극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설계경기가 사회적으로 좋은 건축을 위한 발표의 기회가 되고 건축사협회는 그러한 좋은 심사를 주관하거나 자문하는 실적을 쌓으면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 건물을 지으려는 수준 있는 잠재적 건축주인 일반인이나 기업들에게 알려지고 신뢰를 얻는다면 더불어 숨겨져 있는 많은 경쟁 프로젝트를 공개적인 세상으로 끌어낼 수 있다. 건축의지를 가진 건축주와 설계자를 건강하게 연결하여 수준 높은 건축을 유도할 수 있고, 가까운 지역과 학연, 우연의 수주방식에서 공개적인 건강한 경쟁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공정성 문제

문화적인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공정성문제이다. 객관적인 공정성은 건축설계의 주관적인 작업 성격과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 심사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주관적 판단의 문제와 시행착오의 경험을 사회적 자식으로 축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의 원칙, 주관주의적인 원칙, 공개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불편하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사회적 경험을 영향력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 긴다. 현상설계의 진행과 심사가 건축사협회라는 전문가 집단에 위축되고 자문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더욱 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건축설계경기의 심사는 UIA 규준처럼 건축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 사전에 심사위원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를 위한 판단에 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과정은 심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심사위원이 지도록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제도의 체계화의 중심인 건축사협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기본 원리는 시장원리 즉 경쟁의 원리이다. 그러나 기득권의 힘이나 거대 자본의 힘에 대한 소외자나 소수자의 권리의 보호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문화 예술 분야는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호 육성해주지 않는다면 존립할 수 없다.

건축은 순수예술과 달리 생산적 직능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문학적 특성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호되고 장려된 문학적 가치들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허루아침에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 기초를 둔 문학적 수준이 높아지는 않는다. 참여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경험을 누적하고, 교육과 홍보에 투자하면서 신뢰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한다. 그 행동의 중심에 건축사협회가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행정의 중심을 기술적인 우위와 제도 연구의 노력으로 되 찾아와야 한다. 그 노력은 권한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회원의 집합체인 건축사협회가 그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소규모 건축사와 그 동안 지역과 국가의 건축과 도시발전에 기여해온 많은 기성 건축사들을 위해서 건축사협회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제도의 정비를 노력해야 한다.

우리도 국내 건축설계경기를 위해서 준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연구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UNESCO와 UIA의 국제설계경기 규준은 국내의 설계경기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 훌륭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다른 그 중심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 설계경기는 프로젝트설계경기와 아이디어설계경기로 구분된다.
- 초청설계의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설계경기를 가급적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1단계는 기본적인 접근(general approach)으로 설계자의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작은 축척의 스케치도면으로 하며, 10개정도 선택한다. 2단계 까지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은 1, 2차 동일해야 한다.
- 참가자에게 공탁금 혹은 참가 등록비용을 내게 할 수 있고, 이 비용의 목적은 참가자들의 참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며 많은 사람이 등록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등록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한 응모자에게 돌려준다.
- 주최자는 심사결정에 승복하여야 하며, 심사발표 1개월 안에 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설계자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공식적인 동의 없이 어떠한 변경도 이루어질 수 없다.
- 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주최 측의 권리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단 한번 주어진다.
- 심사위원은 설계경기 개막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이름과 보조심사위원의 이름은 설계경기지침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은 7인을 넘지 않고 출수되어야 한다. 건축가가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또는 기술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

로 구성된다.

- 심사위원은 설계경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은 실격시킨다.
- 심사위원에 의해 탈락 처리된 작품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는 설계자의 이름과 함께 적어도 2주일 이상 전시되며, 심사보고서의 서명 사본도 첨부된다. 전시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전체상금의 액수는 예상 건축 비용의 1.5% ~ 3%에 해당되어야 한다.(유럽이 미국의 설계비를 공사비의 8% 정도로 생각하면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의 금액일 것이다. – 건축가협회의 규준에는 설계비의 총액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의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가에 대한 신뢰, 주관주의에 대한 존중, 공개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사협회는 흘어져있는 건축사들의 그 동안 경험과 지식을 수렴하여 전문적이고 공정한 효율적인 설계경기의 규준을 만들고 전문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각계에서 진행되는 설계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자문과 진행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개발업체나 단체 등 건설을 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게동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조차 전문성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진행과 지문의 의뢰가 오도록 능력과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설계경기를 공정한 경쟁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건축주와 설계자를 위한 제도와 수주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심에 건축사협회가 있다고 믿는다. ■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2호, 2005. 6. 27)

### ■ 주요 개정내용

- 건축설계경기 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자격 신설(제11조)
- 미술관 등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회로 해당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일부비율(10~30%) 참여(제1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설계경기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역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설계안을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하여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설계경기”라 함은 제2조의 벌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부터 각각 설계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 “전문기관”이라 함은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건축설계공모평가(이하 “설계경기 등의 평가”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건축사법 등에 의거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에 관한 분야별 전문기준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으로 벌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함은 영 제38조·규칙 제13조의2 제1항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수준의 설계등과 예술성·작품성·참여 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입

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 “설계경기공모(인평)”라 함은 영 제38조·규칙 제13조의2 제2항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상장성·기념성·예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청의성이 요구되어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현상공모에 의하여 발주할 경우 동 운영지침과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5호 내지 제7호의 방식에 의한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일반공개경기”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경기 방식을 말한다.
- “제한공개경기”라 함은 영 제37조등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경기방식을 말한다.
- “지명초청경기”라 함은 벌주기관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 경기방식을 말한다.

- “벌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경기들의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설계경기공모등에 참여한자”라 함은 설계경기 등의 입찰에 참여한 자와 건축설계경기 공모안을 제출하는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공모안”이라 함은 건축설계 경기방식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벌주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제4조(설계경기등의 종류)** ① 설계경기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및 지명초청경기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벌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등에 따라 당해 설계경기의 20상의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설계경기등의 시행공고)** ① 벌주기관등이 설계경기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동조 제3항제6호의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인 다음 각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
  - 응모자격
  - 설계경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 서를 포함한다)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규칙 제13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단지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설비, 조경 및 토목등 배점기준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카. 기타 설계경기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평가시행 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경기의 일정)** ① 벌주기관 등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경기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계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 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중 등록 마감일부터 설계경기 공모인등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 일 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7조(등록)** ① 설계자들은 벌주기관 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경기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 벌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인작성자지원서(이하 “설계지원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를 포함한다) 관계등 벌주기관등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의 위원을 배제등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설계경기심사)** 벌주기관등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지원서를 작성하고 경우에 설계경기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경기공모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질의응답)**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경기심사의 내용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벌주기관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 벌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에 대하

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출도서등) ① 제5조제1항 바탕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경기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되며,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설계경기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인동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설계경기 공모인은 발주기관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사위원회의 자격) 건축설계경기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건축업무와 관련된 5급이상공무원
-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임원
-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시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자 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 기관 또는 전문기관장이 인정한 자

####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70%이상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등의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격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위원회선정 및 방법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 시행공고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정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시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시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경기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

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설계경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준방법 및 심사위원회의 선정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4조(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① 영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등에서 설계경기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경기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경기심사부의 부합여부  
나. 공모인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다.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  
라. 제3조제3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7」제2호 및 제3호의 평가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③ 설계공모인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사) ①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1항 이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모인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심의의 경우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심사위원회는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입상작)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 ② 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안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8조(공모안의 전시)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안의 반환) 발주기관등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인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발주기관등은 이 치침의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법위안에서 한국설계경기운용위원회가 정한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및 국제건축기연맹(UIAI)이 정한 설계경기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세부기준) 발주기관은 이 치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이 치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43호(98. 2. 19)로 공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